강릉 더리브 퍼스티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강릉더리브퍼스티지.com)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2.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예약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 고객센터(1600-1311)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징시간의 전화상담요청 등으로 통화의 지연 및 대기,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필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 음	없 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계약체결
일 정	09월 26일(월)	09월 27일(화)	09월 28일(수)	10월 05일(수)	10월 06일(목) ~ 10월 15일(토)	10월 17일(월) ~ 10월 19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방문 (10:00 ~ 17: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견본주택 (강릉시 지변동 360-6)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다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3조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고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강릉시 주택과 – 제25088호(2022. 09. 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6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총 1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22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 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 주택	2022000599	01	112.2643A	112A	112.2643	28.0100	140.2743	83.7957	224.0700	60.6288	21	2	1	3	18	2
		02	112.2994B	112B	112.2994	27.5788	139.8782	83.8219	223.7002	60.6477	39	4	1	5	34	2
		03	130.0236	130	130.0236	30.6586	160.6822	97.0516	257.7337	70.2198	105	11	3	14	91	6
		04	148.8292	148	148.8292	34.1877	183.0169	111.0884	294.1052	80.3758	6	-	-	-	6	-
		05	180.8676	180P	180.8676	46.1800	227.0476	135.0023	362.0498	97.6783	3	-	-	-	3	-
		06	195.0026	195P	195.0026	47.7795	242.7821	145.5528	388.3350	105.3119	2	-	-	-	2	-
	합 계										176	17	5	22	154	1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 (10%) 계약시	1주일 內	중도금(60%) 1회(10%) 2022.12.05	2회(10%) 2023.04.05	3회(10%) 2023.08.05	4회(10%) 2024.01.05	5회(10%) 2024.05.05	6회(10%) 2024.09.05	잔금 (30%) 입주지정일
112A	21	101동 (6호)	2층	1	127,960,000	389,400,000	38,940,000	556,300,000	20,000,000	3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166,890,000
			3층	1	132,880,000	404,200,000	40,420,000	577,500,000	20,000,000	3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173,250,000
			4층	1	138,690,000	422,100,000	42,210,000	603,000,000	20,000,000	4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5~8층	4	144,620,000	439,800,000	43,980,000	628,400,000	20,000,000	4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188,520,000
		102동 (4호)	2층	1	126,060,000	383,400,000	38,340,000	547,800,000	20,000,000	3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164,340,000
			3층	1	129,970,000	395,300,000	39,530,000	564,800,000	20,000,000	3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56,480,000	169,440,000
			4층	1	135,790,000	413,100,000	41,310,000	590,200,000	20,000,000	3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177,060,000
			5~10층	6	141,710,000	430,900,000	43,090,000	615,700,000	20,000,000	41,57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184,710,000
			11~15층	5	144,620,000	439,800,000	43,980,000	628,400,000	20,000,000	4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62,840,000	188,520,000
112B	39	101동 (3호)	2층	1	122,750,000	373,500,000	37,350,000	533,600,000	20,000,000	3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160,080,000
			3층	1	126,670,000	385,300,000	38,530,000	550,500,000	20,000,000	3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165,150,000
			4층	1	132,490,000	403,100,000	40,310,000	575,900,000	20,000,000	3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172,770,000
			5~10층	6	137,410,000	417,900,000	41,790,000	597,100,000	20,000,000	3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179,130,000
			11~20층	10	141,220,000	429,800,000	42,980,000	614,000,000	20,000,000	4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21~22층	2	145,140,000	441,600,000	44,160,000	630,900,000	20,000,000	4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63,090,000	189,270,000
		102동 (2호)	2층	1	122,750,000	373,500,000	37,350,000	533,600,000	20,000,000	3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53,360,000	160,080,000
			3층	1	126,670,000	385,300,000	38,530,000	550,500,000	20,000,000	3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165,150,000
			4층	1	132,490,000	403,100,000	40,310,000	575,900,000	20,000,000	3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172,770,000
			5~10층	6	137,410,000	417,900,000	41,790,000	597,100,000	20,000,000	3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59,710,000	179,130,000
			11~19층	9	141,220,000	429,800,000	42,980,000	614,000,000	20,000,000	4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130	105	101동 (1호)	2층	1	139,320,000	423,800,000	42,380,000	605,500,000	20,000,000	4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181,650,000
			3층	1	143,750,000	437,500,000	43,750,000	625,000,000	20,000,000	4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4층	1	149,350,000	454,500,000	45,450,000	649,300,000	20,000,000	4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194,790,000
			5~10층	6	156,110,000	474,900,000	47,490,000	678,500,000	20,000,000	4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203,550,000
			11~20층	10	159,390,000	485,100,000	48,510,000	693,000,000	20,000,000	4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07,900,000
			21~25층	5	165,090,000	502,100,000	50,210,000	717,400,000	20,000,000	5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71,740,000	215,220,000
		101동(2호) 102동(1호)	2층	2	141,530,000	430,700,000	43,070,000	615,300,000	20,000,000	4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184,590,000
			3층	2	146,080,000	444,200,000	44,420,000	634,700,000	20,000,000	4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63,470,000	190,410,000
			4층	2	152,730,000	464,700,000	46,470,000	663,900,000	20,000,000	4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199,170,000
			5~10층	12	159,390,000	485,100,000	48,510,000	693,000,000	20,000,000	4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07,900,000
		102동(1호)	11~18층	8	162,770,000	495,300,000	49,530,000	707,600,000	20,000,000	5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212,280,000
		101동(2호)	11~20층	10	162,770,000	495,300,000	49,530,000	707,600,000	20,000,000	5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212,280,000
			21~22층	2	168,370,000	512,300,000	51,230,000	731,900,000	20,000,000	5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73,190,000	219,570,000
		101동(4호,5호) 102동(3호)	2층	3	144,910,000	440,900,000	44,090,000	629,900,000	20,000,000	4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62,990,000	188,970,000
			3층	3	149,350,000	454,500,000	45,450,000	649,300,000	20,000,000	4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64,930,000	194,790,000
			4층	3	156,110,000	474,900,000	47,490,000	678,500,000	20,000,000	4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203,550,000
			5~10층	18	162,770,000	495,300,000	49,530,000	707,600,000	20,000,000	5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70,760,000	212,280,000
		101동(4호)	11~18층	8	166,150,000	505,500,000	50,550,000	722,200,000	20,000,000	5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216,660,000
		101동(5호)	11~13층	3	166,150,000	505,500,000	50,550,000	722,200,000	20,000,000	5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216,660,000
		102동(3호)	11~15층	5	166,150,000	505,500,000	50,550,000	722,200,000	20,000,000	5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72,220,000	216,660,000
148	6	101동(1호)	1층	1	151,730,000	461,700,000	46,170,000	659,600,000	20,000,000	4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197,880,000
		101동(2호) 102동(1호)	1층	2	155,570,000	473,300,000	47,330,000	676,200,000	20,000,000	4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202,860,000
		101동(4호,5호) 102동(3호)	1층	3	158,090,000	481,100,000	48,110,000	687,300,000	20,000,000	48,730,000	68,730,000	68,730,000	68,730,000	68,730,000	68,730,000	68,730,000	206,190,000
180P	3	101동 (2호)	23층	1	267,420,000	813,800,000	81,380,000	1,162,600,000	40,000,000	76,260,000	116,260,000	116,260,000	116,260,000	116,260,000	116,260,000	116,260,000	348,780,000
			24층	1	273,170,000	831,300,000	83,130,000	1,187,600,000	40,000,000	78,760,000	118,760,000	118,760,000	118,760,000	118,760,000	118,760,000	118,760,000	356,280,000
			25층	1	278,920,000	848,800,000	84,880,000	1,212,600,000	40,000,000	8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363,780,000
195P	2	102동(3호)	16층	1	276,230,000	840,700,000	84,070,000	1,201,000,000	40,000,000	8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360,300,000
			17층	1	287,730,000	875,700,000	87,570,000	1,251,000,000	40,000,000	85,10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375,3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면적합산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은 계약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할 경우 지정계약 기간 내 1차 계약금 납부 후 7일 내 2차 잔여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잔여계약금의 납부지연 및 미납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별도의 고지 없이 판매할 수 있고 판매시 예비입주자, 무순위 신청자 순으로 먼저 배정하여 이후 사업주체가 임의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을 납부하거나 1차, 2차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112A	112B	130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4	11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3	5
합 계	3	5	14	2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만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강원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 분	순 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